

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335호

개 정 이 유

설계등 용역의 보증이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중복되고, 보증기간이 장기간 설정됨에 따라 영세한 용역업체에 부담이 과중되므로 보증의 종류와 보증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시행령에 위임한 “보증의 종류”에 대하여 기본설계손해배상보증과 실시설계손해배상보증으로 구분하고자 함(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행을 동일업체가 할 경

우 실시설계만 보증.)

나.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현행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에서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로 보증기간을 단축함.

주택회보